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박종권)

가. 제안이유

-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관급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환수에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잘못 지급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환수방법에 있어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2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이 개정 조례안은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환수하는데 있어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2조제1항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22조제2항에 '이미 지급된 포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 그 밖에, 안 제15조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표현을 어법에 맞게 첨가하는 것 임.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의 제22조(포상금의 환수)제2항은 법률에 위임 없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5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환수에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잘못 지급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환수방법에 있어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22조)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 「건설산업기본법」
- 3)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7.9.14. ~ 10.10.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후 접수”를 “후 접수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② (생략)</p> <p>③ 신고자의 신분이 불명확 또는 근거자료 부재 등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완료 후 접수</p> <p>제22조(포상금의 환수)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포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p>	<p>제1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후 접수한다.</p> <p>제22조(포상금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